

[] 검정기관
[] 자체검정사업자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지정 신청분야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검정기관, []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제
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최근 2년간의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자체검정사업자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 원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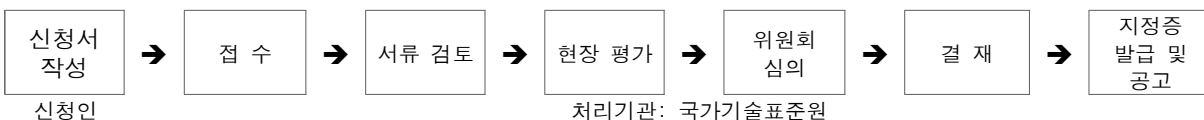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